#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2

발의연월일: 2022. 4. 11.

발 의 자:이정문·김병기·김철민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박완주 • 서영석 • 신동근

이광재 • 이성만 • 이탄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등).

#### 법률 제 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57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 조제4항 중 "제1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	
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	
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u>다만, 분쟁의</u>	<u>&lt;단서 삭제&gt;</u>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	
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제	
<u>외한다.</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 등) ①・② (생 략)	제20조(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③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
	<u>다.</u>

- 1. 2. (생 략)
- 3.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 ⑥ (생 략)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 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 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 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80 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 1. 2. (현행과 같음)
-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80 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 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 <단서 삭제>

법률 제18570호 대리점거래의 공 법률 제18570호 대리점거래의 공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 대하여 제1항-----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생 략)

- 력) ① ~ ③ (생 략) 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조정절차 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 ⑤ (현행과 같음)